

구  
리  
시  
인

구  
리  
시  
인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 경 영 성 과 계 약 서



구 리 시



구리도시공사

# 구리시-구리도시공사 경영성과계약서

구리시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본 경영성과계약의 내용을 상호 충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2024년 4월 30일

구리시장  
백경현



백경현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유동혁

# 경영성과 계약서

##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장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시장과 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장인

시장인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년 5월 2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고, 제반 경영 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이라 한다), 「구리도시공사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사장은 법, 조례, 공사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장의 복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사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 ④사장이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 제6조(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등)** ①사장은 재임기간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내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사장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사장은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⑤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받아 [별표6]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9조 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 제7조(경영목표)** ①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1]과 같다. 특히 책임 경영을 위해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활성화와 수익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사장은 공사의 경영환경과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매 사업연도별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결정한다.

**제8조(경영실적보고)** 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하며 평가 완료 시기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제1항의 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1] 과 같으며, 매년 시장이 실시하는 목표 이행실적평가 계획 및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목표 이행실적평가 등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경영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①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의 “목표 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기본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한다.
- ②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시킬 수 있다. 사장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별표6]과 같다.
- ③평가대상 사업 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사장이 재임한 경우에 연봉조정과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1조(보수체계)**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본연봉)** ①제11조 사장의 기본연봉액은 [별표3]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임용 시 보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③사장의 기본연봉은 계약 제10조 제1항의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제3항에 의한 인상 또는 삭감은 연봉조정을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이내에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사장 퇴임 후 제3항에 의거 연봉조정 사유 발생 시 1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성과급)** ①성과급 지급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②사장의 성과급은 제1항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평가 대상 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평가 완료 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퇴임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사장이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①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사장이 재임시 지급받은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리후생 등)** ①공사는 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기 타

**제17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시장과 상호 협의 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구리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제1조(계약기간) ①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용일로부터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① 제9조에 의한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는 2024년(임기시작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부터 실시한다. 다만 평가방법 및 시기는 매년 시장과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붙임 1.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1부.  
2.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1부.  
3. 기본연봉 1부.  
4. 연봉 조정표 1부.  
5. 성과급 지급률표 1부.  
6. 사장 연임 및 해임기준 1부. 끝.

【별표 1】

## 경영목표(2024~25) 및 평가기준

경영목표	평가기준	목표치	기준치	배점	비고
책임경영구현 (15점)	1. 사장의 리더십	100%	60%	5점	비계량(5)
	2. 권장정책 및 시책 준수 - 시장 지시사항 추진(정성 5점) -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내용의 충실성 및 입력기간 준수 -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실적 - 청년 의무고용 실적 및 사전심사제 이행실적 - 전기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100%	60%	10점	계량(5) 비계량(5)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10점)	1. 조직·인사관리(5)	100%	60%	5점	비계량(5)
	2. 재무관리(5)	100%	60%	5점	비계량(5)
경영성과 극대화 (60점)	1. 개발사업 경영 성과 - 테크노밸리 조성사업(10) - 가칭)토평동 주차빌딩 건립사업(10) -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0) -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5) -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5)	100%	60%	40점	비계량(40)
	2. 관리대행(수탁)·위탁 사업 운영 - 관리대행(수탁)·위탁 실적(4) - 시설·환경관리(4) - 신규 수탁관리사업(2)	100%	60%	10점	비계량(10)
	3. 주차장 확충방안 마련 및 추진실적	100%	60%	5점	비계량(5)
	4. 고객만족	100%	60%	5점	계량(5)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공공 서비스 제공 (15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100%	60%	2점	비계량(2)
	2. 고객 및 주민과 소통 및 참여 경영 실현	100%	60%	2점	비계량(2)
	3.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0%	60%	2점	비계량(2)
	4. 재난안전 및 환경 관리	100%	60%	5점	계량(3) 비계량(2)
	5. 지역상생 및 협력	100%	60%	3점	비계량(3)
	6. 정보보안 관리	100%	60%	1점	계량(1)
계	4개 분야 14개 항목	-	-	100점	정량 14점 비계량 86점

※ 목표치(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기준치(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수준)

- 목표치 달성 시 해당목표 만점, 기준치 미달 시 0점 처리

※ 비계량 지표 측정(평가기준 참조) : 9단계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 ① 책임 경영 구현 (15점)

지 표 명	1. 사장의 리더십				
지표정의	경영개선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회적 책임 실현성과(스마트환경 경영, 시민 행복, 혁신성장, 안전우선, 윤리·책임경영 등)</li> <li>○ ESG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li> <li>○ 조직 구성원 동기부여,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대내외 이해관계자(구리시, 시의회, 지역주민 등)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li> </ul>				

지 표 명	2. 권장정책 및 시책 준수				
지표정의	공기업(행안부 지침 등) 정책준수 및 구리시 시책 추진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계량/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시사항 추진 노력과 성과(정성 5점)</li> <li>○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내용의 충실성 및 입력기간 준수(정량 1점)</li> <li>○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실적 평가점수(정량 2.5점)</li> <li>○ 청년 의무고용실적, 사전심사제 이행실적 평가점수(정량 1.5점)</li> <li>○ 전기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감점 -1점)</li> <li>○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노력과 성과(감점 -1점)</li> <li>○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감점 -1점)</li> </ul>				

### ②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10점)

지 표 명	1. 조직·인사관리				
지표정의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li> <li>○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채용비리(배점 없음, 0점)</li> </ul>				

지 표 명	2. 재무관리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재무운영 노력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li> <li>○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li> <li>○ 예산집행의 적정성(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급제도 운영 적정성 등)</li> </ul>				

### ③ 경영성과 극대화 (60점)

지 표 명	1. 개발사업 경영 성과				
지표정의	개발사업 추진 성과 평가				
배 점	4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크노밸리 조성사업(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위원회 개최</li> <li>-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지원</li> </ul> </li> <li>○ 가칭)토평동 주차빌딩 건립사업(10점) : 사업추진 확정</li> <li>○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창업센터 무상귀속 및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지원</li> </ul> </li> <li>○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5점) : 건축 인허가 완료</li> <li>○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활용 시민 편익 증진</li> </ul> </li> </ul>				

지 표 명	2. 관리대행(수탁)·위탁 사업 운영				
지표정의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수탁)·위탁 사업 성과 및 관리노력 평가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수탁)·위탁 실적(4점) : 2024년</li> <li>○ 시설·환경 관리 평가(4점)</li> <li>○ 신규 관리대행(수탁) 사업 확보(2점) : 신규 수탁관리 사업 실적</li> </ul>				

지 표 명	3. 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및 추진 실적				
지표정의	구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방안 마련 및 추진 실적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방안 마련 및 추진실적</li> </ul>				

지 표 명	4. 고객만족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3점) : (실적/100점)x3</li> <li>○ 전년도 대비 개선도(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미만 : 1.0점</li> <li>- 3%~6% 미만 : 1.3점</li> <li>- 6%~9% 미만 : 1.7점</li> <li>- 9% 이상 : 2점</li> </ul> </li> </ul>				

#### 4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공공서비스 제공(15점)

지 표 명	1.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지표정의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일·가정 양립 노력</li> </ul>				

지 표 명	2. 고객 및 주민과 소통 및 참여 경영 실현				
지표정의	고객 및 지역 주민에게 공기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경영에 참여 노력 평가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주민 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노력과 성과</li> <li>○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및 주민의견 반영 노력과 성과</li> <li>○ 고객·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li> <li>○ 고객 및 주민만족도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li> <li>○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li> </ul>				

지 표 명	3.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표정의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 근절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 여부</li> <li>○ 윤리 및 인권 경영, 부패(이해충돌) 방지 교육 등 예방 노력 실적</li> <li>○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li> <li>○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 야기 여부</li> </ul>				

지 표 명	4. 재난안전 및 환경 관리				
지표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계량/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적정성</li> <li>○ 재난·안전 관리 역량강화의 노력과 성과</li> <li>○ 재난·안전관리 활동 및 이행 성과</li> <li>○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li> <li>○ 안전사고 발생률 평가점수(정량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사고건수/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100 (정량 0.5점)</li> <li>• (직원사고건수/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100 (정량 1점)</li> <li>• (차량사고/자동차등록대수)*100 (정량 0.5점)</li> </ul> </li> <li>○ 친환경 경영실적 환경부 평가점수(정량 1점)</li> </ul>				

지 표 명	5. 지역상생 및 협력				
지표정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 평가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협력 노력과 성과</li> <li>○ 지역공동체 강화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과 성과</li> <li>○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노력과 성과</li> </ul>				

지 표 명	6. 정보보안 관리				
지표정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 및 사고발생 예방 노력 성과 평가				
배 점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안 관리실태 준수 여부</li> <li>○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평가 결과</li> </ul>				

## 【비계량지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등급 구분 및 평가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0점

등급	평가 기준	평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li> <li>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li> <li>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li> </ul>	90~1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80~90미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 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li> <li>전기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li> <li>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li> </ul>	70~80미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60~70미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li> <li>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li> </ul>	50~60미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li> <li>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li> <li>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li> </ul>	40~50미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30~40미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li> <li>사업 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li> </ul>	20~30미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장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0~20미만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 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별표 2】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급 기준

(계약서 제9조 제3항)

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사정인 사정인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별표 3】

## 기본연봉

(계약서 제12조 제1항)

□ 기본연봉 : 98,000,000원

※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가족수당 별도)

14021

14021

【별표 4】

## 기본연봉조정표

(계약서 제12조 제3항)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

(단위: %)

평가등급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가	나	다	라	마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 전부)	가	10	5	3	0	△5
	나	5	3	2	0	△6
	다	3	2	1	0	△7
	라	0	0	0	0	△8
	마	△5	△6	△7	△8	△10

【별표 5】

## 성 과 급 지 급 률 표

(계약서 제13조 제2항)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

평가등급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가	나	다	라	마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가	400~361	360~331	330~301	0	0
	나	300~261	260~231	230~201	0	0
	다	200~161	160~131	130~100	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적용

【별표 6】

## 연임 또는 해임 기준

(계약서 제10조 제2항)

### ① 경영성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가. 연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나. 해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 9. 21.>

### ② 시장이 별도로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 가. 연임기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기준에 없는 경우, 시장이 제출한 연임사유를 시장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나. 해임기준

-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기업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서 제6조 제4항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경고, 4회 해임)